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 · 반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 보고서

2007. 2. 28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2월 16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7년 2월 20일

다. 상정일자 : 제126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2007. 2. 28)

상정, 심사, 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과장 장 종 환

가. 제안이유

- (1) 통장의 연임규정에 제한이 없는 이유등으로, 적극적인 통장 후보가 추천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 (2) 동 행정 및 주민 지역 업무를 효율적,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연령 및 연임규정과 해촉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며,
- (3) 위촉자격 상한연령자에 대한 당연해촉규정을 명확하게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1)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통장 연임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구정의 참여 기회를 확대함.(안 제4조)
- (2) 임기중 해당통장의 연령이 위촉자격 상한연령을 초과하면 당연 해촉된다고 개정하여 규정의 명확성을 기함.(안 제4조)

- (3) 통장의 위촉시 연령 제한을 20세이상 65세이하에서 30세 이상 63세이하로 조정하여 주민들의 신망을 높이고 통장의 활동력을 높임.(안 제5조제2항)
- (4) 2007년 4월 1일 현재 재임중인 통장으로서 63세가 넘는 자는 현직에 위촉된 날로부터 2년이 된 날에 해촉된다. 다만 임기중 연령이 65세가 넘으면 당연 해촉된다.
(부칙 제2조제1항)
- (5) 2007년 4월 1일 현재 재임중인 통장으로서 20세이상 30세 미만의 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직에 위촉된 날로부터 2년이 된 날에 해촉된다.(부칙 제2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건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조직과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중 통장의 연임규정과 위촉연령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개정내용>

○ 안 제4조에서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임기 중에 연령에 의한 해촉규정을 위촉자격 상한연령을 초과하면 당연 해촉되도록 하였음.

○ 안 제5조제2항에서 통장 위촉시 연령을 현행 20세이상 65세이하에서 30세이상 63세이하로 조정하였으며, 부칙 안 제2조제1항과 제2항에서는 현재 재임중인 63세가 넘는 통장과 20세이상 30세 미만에 해당하는 통장에 대한 해촉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음.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통장임기의 연임규정에 제한이 없어 당연 해촉

되는 상한연령에 도달하는 날까지 관행적으로 계속 유임됨에 따라
 신망있고 활동적이며 적극적인 통장을 영입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통장 위·해촉 연령을 하한연령은 20세에서 30세로 높이고
 상한연령은 65세에서 63세로 낮춰 주민 신망과 활동력을 높여
 주민에게 행정시책을 원활하게 전달하고,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6항에 의한 당해 통의 민방위대장으로서 주민 자조의 지역방위
 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통장 위·해촉 상한연령을 65세에서 63세로 낮추고자하는 것은
 점차 근로연령이 고령화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적합하지 않다는
 일부의견도 있는 것으로 사료됨으로 이에 대한 검토가 요망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수정안 요지 :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7. 2. 28 박지위 위원 외3

나. 수정이유 : 동 조례안 제5조제2항중 통장의 상한연령
 을 65세에서 63세로 낮추고자 하는 것은 점차 근로연령이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를 감안 할 때 적합하지 않다는
 일부의견이 있어 상한연령을, 현행과 같이 65세로 수정
 하고자 함.

다. 수정 주요골자

- 안 제5조제2항 중 “30세이상 63세이하” 를 “30세이상 65세
 이하” 로 수정.
- 안 부칙 제1조(시행일)를 제1항(시행일)으로 하며,
- 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통장 및 반장
 의 위·해촉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토록 함.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사항 : 없 음